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가단25353 도시가스배관철거 등

원 고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변론종결 2014. 6. 17.

판 결 선 고 2014. 7. 8.

주 문

- 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중구 반구동 E 도로 13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①부분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을 수거하고,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,1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, 2014. 5. 21.부터 위 도시가스 배관을 수거할 때까지 월 2,78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울산 중구 반구동 E 도로 1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, 2013. 7. 29.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84. 9. 20. '답'에서 '도로'로 변경되었다.

나. 피고 C은 울산 중구 반구동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, 피고 D은 울산 중구 반구동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.

다. 이 사건 토지는 울산 중구 반구동 H 도로에서 피고들의 위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(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, 그 통로는 울산 중구 반구동 I 도로 80㎡와 이 사건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) 중 끝 부분에 위치하고,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,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은 피고 D의 위 토지와 순번 1,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은 피고 C의 위 토지와 닿아있다.

라.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통로는 현재까지 30년 이상을 피고들의 건물의 거주자와 인근 주민, 일반 공중의 통로로 무상으로 사용되어 왔다.

마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가스회사'라고 한다)는 2006. 12.경 이 사건 토지의 지하를 거쳐 피고들의 위 건물에 이르는 도시가스 배관(이하 '이 사건 도시가스배관'이라고 한다)을 설치하고, 피고들의 위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, 2, 3호증, 갑제6호증의 1 내지 4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주장

(1) 원고

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사유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나 원고의 토지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도시가스배관을 불법 매설하여 이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·관리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가스배관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, 이를 인도할 때까지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(2) 피고 가스회사

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30년간 사용되었고,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.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러한 사 정을 알고 이를 경락받았다. 따라서 피고 가스회사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도 시가스배관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,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,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,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,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,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,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・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

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(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 11829 판결,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27114 판결 등 참조),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,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다25890판결 참조).

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위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점(원고는 울산 중구 반구동 K를 통과하는 다른 통행로가 있다고 주장하나, 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)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, 피고 D을 비롯한 인근주민및 일방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고, 원고는 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피고 가스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한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도시가스배관 수거 주장은 이유 없고,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홍순욱

